



## 나의 권리 알기 - 단수 및 공공 서비스 차단 방지

### 수도 요금을 체납한 경우 대처 방법

- **수도 공급업체로부터 정보를 얻으세요:**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사용자가 요금 지불을 60일 이상 연체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수도 공급업체에 대해 단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도 공급업체는 단수 조치를 실시하기 전, 영업일 최소 7일 전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연락을 취해야 하며, 업체 웹사이트에 단수 정책에 대해 게시해야 합니다. 업체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단수 정책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수도 공급업체에 요금제에 대해 문의하세요:** 수도 공급업체는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차단하기 전에 사용자가 요금제 대신 대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단수를 피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수도 공급업체와 논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도 요금 청구서 내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단수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 진행 중에는 업체가 수도 서비스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단수 보호법에 대한 정보는 [여기](#)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캘리포니아의 대부분 수도 공급업체에 적용됩니다. 일부 수도 공급업체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월 수도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지 공급업체에 문의하세요.
- **수도 요금 할인을 신청하세요:** 사용자의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 요금 지원(LIRA)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도 공급업체에 문의하세요. 또한 사용자가 CalFresh, Medi-Cal, SSI, 일반 지원 또는 기타 혜택 등 특정 혜택을 받고 있거나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200% 미만인 경우, 수도 공급업체는 12개월에 한 번씩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이자 비용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 다른 공공 서비스 요금을 체납한 경우 대처 방법

- **공공 서비스 제공업체에 요금 납부제에 대해 문의하세요:** 대부분의 민간 공공 서비스 회사는 사용자가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주는 요금 납부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요금 납부제에 동의한 후에는 전기 서비스를 차단할 수 없으며, 기간 내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전기 서비스를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캘리포니아 공공사업 위원회(CPUC)가 요금 납부제를 위한 협상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용자가 공공 서비스 회사와 요금제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CPUC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CPUC의 민원 해결 절차 중에는 전기나 가스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시, 카운티 또는 로스앤젤레스 수도 및 전력 부서(LA DWP)나 새크라멘토 시립 공공사업 지구(SMUD) 등 기타 지방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공공 서비스 제공 기관에 요금 납부제에 대해 문의하세요.

- **가스 및 전기 요금 할인제에 가입하세요:** 민간 기업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전기 및 가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CARE 프로그램](#)의 경우, 전기 요금에 대해 최대 30~35%, 천연 가스 요금에 대해 20% 할인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소득이 소득 한도를 약간 초과하여 CARE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PG&E, SDG&E 또는 남캘리포니아 에디슨 전력 회사의 고객인 경우, 전기 요금의 18%를 할인해주는 [가족 전기 요금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 카운티 또는 기타 지방 정부 공급업체로부터 가스 및 전기 서비스를 받는 경우, 고지서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거나 공급업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월별 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 **가스 또는 전기 요금에 대한 일회성 결제 지원금을 받으세요:** 저소득층 주민은 난방 또는 냉방 비용에 대해 일회성 결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자가 어떤 유형의 공공업체로부터 전력 서비스를 받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저소득층 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의 추가적 보호 정책:** 전기 공급 차단으로 인해 사용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세요. 이용 가능한 추가적 선택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공급업체가 사용자를 직접 방문하여 전기 공급을 차단하기 전에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 세입자를 위한 팁

- **세입자로서 나의 권리를 알아보세요:** 임대인은 법원의 명령 없이 수도, 전기, 난방, 가스 또는 기타 공공 서비스를 차단하여 세입자를 임대 주택에서 강제로 내보내거나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캘리포니아의 세입자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요금으로 인한 단수를 피하세요:** 개별 계량 서비스를 사용하는 세입자의 경우,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임대인이 수도 요금을 납부하다가 체납된 경우 수도 요금을 세입자 본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수도 공급업체는 수도 서비스를 차단하기 최소 10일 전에 고객에게 단수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도 서비스를 세입자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의 미납 잔액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향후 수도 요금을 납부해야 할 책임은 세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나의 수도 계량기를 공유하는 세입자들 모두가 수도 요금에 대한 책임에 동의하고 수도 공급업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수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 **해당 지역의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받으세요:** 위에서 언급한 정부 프로그램 및 리소스 외에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사용자의 자격 여부에 따라 해당 시 또는 카운티의 사회복지 단체, 종교 단체 또는 정부 기관에서 요금 납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 법률 지원 사무소](#)에서 사용자 거주 지역의 적절한 기관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를 클릭하여 각 카운티의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단계를 시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거주지 근처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지원 사무소를 찾으려면 [LawHelpCA.org](#)를 방문하세요. 법률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에 연락하여 공인 변호사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법무부 장관실에 위반 사실을 알리려면 [oag.ca.gov/report](#)를 방문하세요. 법무부 장관실은 개인 사용자를 대리하거나 개인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캘리포니아 주민의 민원 제기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 전체에서 겪고 있는 정책 패턴이나 관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단수 또는 투자자 소유 공공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경우 [주 수도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공공사업 위원회](#)에 각각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